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302300 군의 예비전력관리자 선발 시 복무기간을 이
유로 한 응시제한

진 정 인 ○○○

피 해 자 상동

피진정인 국방부장관

주 문

국방부장관에게, 예비전력관리 담당자 선발 시험에서 예비역 재임관제도로 임관된 단기복무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단기복무 소령인데, 피진정인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공고 시 장기복무 장교와 단기복무 장교를 구분하고 단기복무 소령의 응시를 제한하여 진정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한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육군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국방부령 제1028호, 2020. 7. 15., 일부개정)에 따라 국방부 위임을 받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하고 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그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자격요건을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이며, 예비군지휘관으로서의 자세와 임무 등을 고려하여 직위별 지원 가능한 계급을 정하고 있다.

예비군지휘관은 전시와 평시에 충기를 다루고, 예비군 대원을 지휘하며, 통합 방위법령에 따른 통합 방위작전도 수행하는 등 일반 군무원과는 달리 전투 및 지휘에 특화된 직책이므로 해당 직위에 맞게 일정기간 이상 복무하여 전역한 자를 선발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장기복무 장교는 그 우수성이 검증된 자로 볼 수 있으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서 응시자의 우수성 등을 전부 평가하기에는 시간적·물리적·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응시 자격요건을 장기복무 장교로 제한한 것이다.

또한 영관장교로 전역한 자가 7급 군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현역부대 및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지휘부담 및 계급체계 혼란 요소로 작용되어 전투력 하락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영관장교로 전역한 자의 7급 군무원

응시는 허용하기 곤란하다. 아울러 이를 허용할 경우 6년 이상 복무한 대위 전역자 및 7년이상 복무한 부사관 전역자들의 경력에 따른 점수가 영관장교 전역자에 비해 부족하게 되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군 조직의 특성상 직위에 따른 계급 제한이 필요하고, 장기복무로 선발된 자는 군인사법령에 따른 전형을 거쳐 우수인력으로 검증되었으며, 군무원 7급 응시자격에 영관 장교로 전역한 자를 허용하는 것은 지휘체계상 곤란한 이유 등이 있으므로 직위별 응시자격 완화는 어렵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와 진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5조(직위별 응시자격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지역(5급), 직장 예비군 지휘관, 5급의 경우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로서 같은 법 제7조(의무복무기간)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만 지원할 수 있다.

나.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7급의 경우 「군인사법」 제6조(복무의 구분)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같은 법 제7조(의무복무기간)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으로 하되,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한 위관장교와 7년 이상 복무한 부사관은 일반군무원 7급 응시가 가능하다.

다. 진정인은 사관후보생 장교로 임관 및 전역한 후 재임관제도를 통해 재임관하여 2020. 1. 1. 소령으로 진급하였으며, 2021. 6. 30.자로 전역하였고, 장기복무 선발이 되지 않은 예비역 소령 신분에 해당한다.

라. 2013년도부터 도입된 재임관제도를 통해 재임관된 연도별 중·대위의 수는 2013년에서 2020년 18명에서 8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중사의 경우 같은 기간 19명에서 150명으로 증가하였다. 재임관 중·대위 중 영관장교 이상으로 진급한 수는 총 46명(육군 23명, 해군 11명, 공군 9명, 해병대 3명)이다.

5. 판단

모든 국민은 헌법 제15조에 따라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행사의 자유와 직업결정의 자유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인정사실 가함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시 단기복무 소령이라는 이유로 어느 영역에도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시 장기복무 여부와 군 복무 당시의 계급을 지원요건으로 한정된 것은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장기복무 장교는 관련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되어 통상 10

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말하는 데, 예비역 재임관 제도를 통해 재임관한 진정인의 경우 총 복무기간이 12년에 이르고 있으나 장기복무에 선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기복무자로 분류되며, 또한 재임관전 경력을 합쳐 소위부터 대위까지는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전역 당시 계급이 소령인 관계로 지원 대상을 위관장교 등으로 하고 있는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7급도 지원할 수 없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통상 장기복무에 선발된 군인은 장기복무 선발에서 탈락한 군인보다 상대적으로 근무평정 등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장기복무 여부는 절대적으로 업무수행 능력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인생진로, 다른 직업으로의 취업, 개인사정 등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정사실 라항에 따르면, 2013년도에 도입된 예비역 재임관제도로 재임용되는 장교 또는 부사관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이 제도를 통해 재임관한 후 영관장교로 진급한 사람은 총 46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진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복무에 선발되지 않는 경우 진정인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역 재임관 제도라는 변화된 환경 하에서 진정인과 같은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서, 진정인과 같이 예비역 재임관제도로 임관되어 소령으로 진급한 사람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국방부장관에게 예비역 재임관제도로 임관된 단기복무자들이 예비전력관리 담당자 선발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17.

위원장 이상철

위원 문순희

위원 김수정